

이름이 낙인이 될 때, 지명과 혐오표현의 경계

김주연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



I. '이태원 참사'를 '10.29 참사'로 바꿔 부르자고 한 이유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는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국가적 재난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언론사들은 처음에는 '이태원 참사(사고)'라고 보도했는데, 나중에 몇몇 언론사에서 '이태원 참사'가 아닌 '10.29 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고 결정했다. 참사의 명칭이 특정 지역에 대한 낙인을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과거 '진도 여객선 침몰'을 '세월호 참사'로, '뉴욕 쌍둥이빌딩 붕괴'를 '9.11 테러'로 바꿔 쓴 예가 있었다. 이 같은 명칭 변경은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를 넘어,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이 입는 2차 피해 방지, 사회적 기억과 지역 정체성에 대한 민감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10.29 참사(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명칭 문제는 우리 사회가 재난과 지역을 어떻게 기억하고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설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II. <수리남>에서 <Narco-Saints>로 작품명을 바꾼 이유

드라마 <수리남>은 2022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한국 작품으로, 남아메리카의 작은 나

라 ‘수리남’을 배경으로 한다. 극 중 수리남은 마약 밀매의 거점으로 그려지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지만, 문제는 그 주목이 좋은 쪽이 아니었다는 점이었다. 수리남 정부는 자국 이미지에 훼손을 가져온다고 항의하는 서한을 제작사, 배급사 등에 즉시 보냈다. 결국 드라마 〈수리남〉의 해외 출시 제목이 변경되었다. 원래 제목이었던 ‘Suriname’은 영어권 등지에서 ‘Narco-Saints’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공개되었다. 이 사례는 실존 지명이 콘텐츠의 제목이나 배경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국가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III. 영화 〈치악산〉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1136)

지명이 작품 제목으로 사용되어 논란이 된 케이스는 또 있다. 영화 〈치악산〉(2023)이다. 이 영화는 ‘1980년경 치악산에서 18토막이 난 시체 10구가 잇따라 발견되었다’라는 괴담을 소재로 한 공포물이다. 치악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원주시는 영화 제목에 실제 지명 ‘치악산’이 그대로 사용된 데 대해 제목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원주시는 이 영화가 ‘치악산’을 연쇄살인, 토막살인의 현장인 것처럼 묘사하여 원주시 및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며 주민 복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영화의 배경으로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성이 훼손되거나 영화를 시청한 대중들이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고 보아,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V. 언론보도준칙과 WHO 권고안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이 기각된 것처럼, 드라마 〈수리남〉 역시 법적 판단을 받았다면 유사한 기준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수리남 정부와 제작사 간 타협을 통해 문제가 봉합되었지만, 만일 해외 제목까지 〈수리남〉을 고수했다라면 논란은 더 커졌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지명’은 단순한 행정구역 명칭을 넘어, 특정 이미지를 만들고 때로는 낙인을 찍우는

강력한 상징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현행 법제 안에서 이러한 문제에 제도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은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결국 우리는 보도자, 제작자 등 소위 ‘이름을 만드는 사람들’의 자발적 판단과 윤리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사안의 설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한, 인종·국적·지역 등에 대한 과도한 보도는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며 이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5년 ‘신종 감염병 명명 지침’을 통해, 질병 이름에 특정 지명이나 동물, 음식 이름 등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우한 폐렴’이라는 표현이 ‘COVID-19’로 대체된 것도 이 때문이다.

기간만으로 폐기되었지만, 관련하여 국내 입법 시도가 있기도 하였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공연히 사람을 혐오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다.

V. 영화 <청년경찰>에 묘사된 대림동 ‘혐오’에 대해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45081 판결, 2018나65261 화해권고결정(확정)

이러한 원칙과 권고들이 실제 법정에서 어떤 식으로 다뤄졌는지는 영화 <청년경찰>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45081 판결)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영화 <청년경찰>은 현재의 대림동을 주된 배경으로, 그곳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을 여성 납치 및 장기 밀매에 연루된 범죄자로 묘사한 작품이다. 이에 대림동에 거주하는 조선족 동포 등 60명은 영화 <청년경찰>로 인해 인격권과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판결문에 원고 측 주장이 매우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가치는 충분하다. 이후 2심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제작사가 이를 받아들이며 “조선족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인해 불편감과 소외감 등을 느꼈을 원고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으로 영화 제작 시, 관객들로 하여금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표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충분히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사과하였다. 법원의 판단으로 본안 판결까지 이르는 않았지만, 제작사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으로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하는 중요한 사례이다.



원고는 이 영화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된 인종차별적 혐오표현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혐오표현이란 특정 대상에 대한 인종, 출신국가, 종교, 성별, 장애 등 스스로 주체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사안에 기초하여 개인 또는 집단을 공격, 헐뜯, 모욕하는 언행을 말한다. 원고는 이 영화가 구체적인 장소인 대림동을 배경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특정 인종집단인 조선족에 대한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선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조선족에 대한 혐오감정이나 두려움을 확산시키고 부정적인 낙인을 찍거나 편견을 심화시키는 혐오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말하는 이 사건 영화의 문제는 일반 대중들이 실제사실로 오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상의 사실로 현존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것이었다. 또 즐거움을 목적으로 실존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허위의 사실로 차별을 조장한 것이 역사적 사실을 일부 각색한 것보다 더 악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영화 후기를 보면 ‘대림동 조선족 너무 무서웠어요,’ ‘청년경찰 봤는데 덕분에 조선족과 대림역이 몸서리치게 싫어졌다’라는 내용이 많다.

영화 중반부에 등장하는 택시 안의 짧은 대화는 이 영화가 조선족과 대림동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영화 시작 약 57분경)

택시기사: “학생들, 대림동 다 왔어요.”

(차량이 대림역 12번 출구에서 진입하고, 술에 취한 중국인 취객이 중국말로 술주정을 함)

주연배우: “아 이씨 한국에 이런 곳이 있었어?”

주연배우: “야 간판 봐, 완전 중국이야.”

(골목거리에서 험상궂은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조선족들이 흥기를 들고 서 있고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인사를 함)

택시기사: “학생들, 이 동네 조선족들만 사는데, 밤에 칼부림도 많이 나요. 여권없는 범죄자들도 많아서 경찰도 잘 안 들어와요. 웬만해선 길거리 다니지 마세요.”

주연배우: “알겠습니다.”

“이 동네 조선족들만 사는데 밤에 칼부림이 자주 나요” 같은 표현은 마치 실제 상황을 반영한 것처럼 연출되었으며, 영등포구 대림동의 실제 거리와 상호명, 지하철 출구까지 그대로 등장시켜 사실감과 현실감을 높였다. 원고는 단순한 감정적 불쾌감을 넘어서, 영화 개봉 이후 대림동 일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퍼졌고, 조선족에 대한 혐오 댓글, 지역 주민에 대한 편견 확산, 자녀의 학교생활에서의 따돌림과 같은 2차 피해가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영화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 인격권, 평등권,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침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주장을 옮기면 아래와 같다.

“기존의 명예훼손, 모욕의 보호법익이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인 데 반하여,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의 보호법익은 ‘개인 또는 집단의 존엄과 가치인 인격권’이고, ‘타인과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이며 ‘집단적,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개인이 인간으로서 하나의 민족 및 인종으로 태어나 성장하면서 축적되는 인격 형성과 인종·민족적 정체성, 인종·민족·종교적 가치 및 평가, 개인의 자아실현, 자발적 사회참여, 기회균등 등의 권리인 셈이다. 그런데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은 표적 대상의 개인 또는 집

단에 대한 대중의 생각, 여론을 왜곡시켜 표적 대상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고착화시키게 됨으로써 민주사회의 자정기능(표현의 자유 시장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

“시민 사회에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는 것을 표현의 자유로 보장할 때 비로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가치가 온전하게 실현된다고 할 것인데, 소수에 대한 차별을 공고하게 하는 표현은 소수자 집단의 부정적 이미지를 재현·강화하고, 차별과 편견을 고착화시켜 민주사회의 시민이 자유로운 토의 과정을 거쳐 부적절한 표현을 스스로 자정하는 기능을 마비시킨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수자 집단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민주사회의 자정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원고는 이러한 논거에 따라 이 사건 영화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영화가 완전한 허구이며, 특정 집단에 대해 악의적 공격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오히려 한국인 의사가 더 나쁜 역할로 묘사되었고, 영화 전반이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를 목적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다.

다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1심에서는 비록 기각되었지만 2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영화제작사가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법정 다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법의 형식적인 판단 여부와는 별개로, 현실 배경, 실존 지명, 민족적 특성을 이용하여 관객의 혐오를 자극하는 방식은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향후 유사 콘텐츠가 만들어질 때 어떠한 기준과 책임 의식이 필요한지를 시사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명과 정체성은 단지 배경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과 삶 그 자체이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가 누군가를 혐오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 콘텐츠 제작자와 언론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